

★ ◎

본부장 방침 제104호

문서번호	용지보상부-1517
보존기간	10년
결재일자	2016.06.27
공개여부	공개
일상감사	대상아님

부 원	부원	용지보상부	공공용지처장	공공개발사업본부장
				06/27
박재현	나승중	한명학	이재익	신범수
협 조	맞춤임대부장 남상호			

정릉 공공주택지구 미이주 15세대 이주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SH공사
(공공개발사업본부 용지보상부)

정릉 공공주택지구 미이주 15세대 이주계획 수립

정릉 스카이 아파트가 재난위험시설물(E,D급)지정되어 2008년 1월 대피(이주)명령에 따라 대부분 세대가 이주하였으나, 정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일(2016.6.16) 현재까지 미이주한 15세대에 대하여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보상업무 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시장방침 제24호 - 미이주세대 연내 퇴거 방안 강구

시장방침 제193호 - 거주민의 신속한 이주를 위해 지구지정 추진

I

정릉 스카이 연립 현황

○ 위치 : 성북구 정릉동 894-22번지 일원(5,802m²)

○ 현황 : 5개동 140세대

※ E급(사용금지, 3개동 80세대), D급(사용제한, 1개동 20세대), 기 철거(1개동 40세대)

○ 미이주세대 : 15세대 (가옥주 11, 세입자 4)

○ 항공사진



II

재난위험시설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성북구청에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E, D급)

III

추진현황

- 2004.06.25 :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지정
- 2007.11.30 : 성북구청장 방침
(스카이하파트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주민 관리대책 수립 등)
- 2008.01.14 : 입주자 이주계획(성북구청)
- 2008.01.16 : 재난위험시설물 대피(이주)명령
- 2008.04.30 : 1개동 40세대 철거완료(성북구청)
- 2016.02.26 : 성북구 재난위험 공동주택 정비사업 시행요청(시장방침 제24호)
- 2016.03.11 : 정릉 스카이연립 정비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93호)
- 2016.04.0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016.06.16 : 정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6.06.23 :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IV

추진계획 일정

- 2016.07. ~ 08. : 물건조사
- 2016.09. ~ 10. :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협의회 개최
- 2016.11.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2016.12. ~ 2017.01. : 보상협의
- 2017.02 : 재결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미이주자 현황

- 세대수 : 15세대
- 미이주 사유 :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 요구, 이주대책 요구

■ 이주계획 수립의 필요성 : 재난위험시설물로서 긴급대피 필요

- 시장방침 제24호 - 미이주세대 연내 퇴거 방안 강구
- 시장방침 제193호 - 거주민의 신속한 이주를 위해 지구지정 추진

■ 이주할 대상주택 : 길음 뉴타운지구 인근

- 성북구 정릉동 165-4번지(10세대, 42㎡ ~ 54㎡)
- 성북구 정릉동 227-52번지(12세대, 44㎡ ~ 53㎡)
- 위 주택 2개소 중 미이주자가 선택하여 결정
(단, 무상사용이 아닌 전·월세 사용 → 입주 관련 맞춤형대부와 협의 추진)

■ 이주근거 : 재난관련 임대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지침 제5조

제5조(공급대상) ① 공급 대상자는 관할 구청장의 최초 대피 명령(철거명령이 앞서는 경우 철거명령을 기준으로 함)시 서울특별시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철거되는 주택의 무주택자인 집주인 및 세입자에 한한다.
 ② 건축물관리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고 관할 동장 및 관할 구청 담당과장의 실태 조사결과 주거용으로 확인되고,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를 공급대상자로 인정한다. 다만, 건축법상 허가주택 또는 기존무허가 주택(1989. 1. 24 이전)의 소유자는 거주여부를 불문한다.
 ③ 최초 대피 명령(철거명령이 앞서는 경우 철거명령을 기준으로 함)일 3개월 이전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거주한 자로 인정한다.

■ 대상자 선정 : 용지보상부에서 신청받아 맞춤형대부에 통보

■ 이주주택의 평형 및 입주기간 등 : 맞춤형대부에서 결정

■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지급

[별지 1호 서식]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제7조 관련)						
철거건물	건물유형	허가		무허가		
	소재지					
	면적	㎡	가옥주			
신청인	유형	가옥주		세입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수	
	E-mail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신청현황	신청지역			신청규모	㎡ 이하	
	주택유형	(영구임대, 기존주택매입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중 택일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 분리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무주택(철거되는 건물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서약서 1부.					
위와 같이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주소 성명						